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7. 10. 서영교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7. 11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

-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8.20.)

상정

-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8.22.)

상정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4.11.19.)

상정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-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(2024.11.21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서영교 의원)

현행법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

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.

그러나,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,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.

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‘병원급 의료기관’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·시설·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이지민)

□ 개정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,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인력·시설·운영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□ 다만,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환자·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“요양병원

간병지원 시범사업”(2024. 4월~)을 실시 중이고,

의료기관장에게 사적 고용 간병인을 포함한 간병인의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간병인 관리·감독·지원을 통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수진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99호)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,

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 방안으로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확대, 사적 고용 간병인 인건비 지원 및 관리·감독 강화, 양자 병행 실시 등 적합한 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생략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: 강선우 의원)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심사결과

대안을 제안하고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